

광주고등법원 2023. 5. 24 선고 2022나2317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학

피고, 항소인 1. B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창

담당변호사 조형래

변 론 종 결 2023. 4. 26.

판 결 선 고 2023. 5. 24.

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0가합56488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B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에 제1심판결문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자동차에 관하여 강진군 2020. 2. 24. 접수 D로 마친, 같은 목록 기재 제2항 자동차에 관하여 강진군 2020. 2. 24.

접수 E로 마친, 같은 목록 기재 제3항 자동차에 관하여 강진군 2020. 2. 24. 접수 F로 마친 각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제1심판결문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자동차에 관하여 강진군 2017. 2. 6. 접수 G로 마친, 같은 목록 기재 제3항 자동차에 관하여 강진군 2017. 2. 6. 접수 H로 마친 각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자동차를 인도하라.1)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 대여금채권 담보를 위하여 그 소유의 제1 내지 3 각 자동차들을 피고 B에게 점유개정 방식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위 각 자동차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명의이전등록은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양도담보설정약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하다.

나. 판단

1) 을가 제3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9. 12. 11. 피고 B 명의의 계좌에서 I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이 이체된 후 같은 날 위 돈 중 1,800만 원이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앞서 본 사정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1)항 기재 송금내역 및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 사이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들 사이의 양도담보설정약정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I가 2019. 12. 11. 당시 피고 C의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② 피고 B은 배우자인 I의 부탁으로 피고 C의 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I에게 사용하게 하였다고 밝히고 있고(2021. 6. 29.자 피고들 준비서면 제2, 3쪽), I는 원고로부터 피고 C을 양수한 2017. 2.경부터 2018. 5.경에 이르기까지 피고 B 명의의 계좌를 피고 C 등의 사업용 계좌와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 B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1. 5. 11. 피고 B 앞으로 명의이전등록 되었던 자동차들 중 1대(차량번호 4 생략)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을 마쳤고, 제1 내지 3 각 자동차들에 관하여도 피고 C 앞으로 이전등록을 할 의사가 있으나 위 자동차들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2021. 6. 29.자 피고들 준비서면 제3쪽).

그러나 이후 피고들은 2022. 5.경에 이르러서야 피고들 사이의 양도담보약정이 점유개정방식에 의한 것으로서 유효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는바, 이는 ⑥항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I를 고소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2022. 4. 25. I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자 비로소 주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④ 피고들은 2019. 12. 11.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1,800만 원을 미화 14,753달러로 환전하여 해외수출업체에 옥수수 매입금으로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 C과 위 수출업체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을 제40호증)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피고 C 명의의 거래내역이나 피고 C이 송금받은 돈을 미화로 환전한 내역 또는 위 업체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한 내역, 운송장 및 신용장 내역 등 사업추진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다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설령 위 돈이 피고 C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 사이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⑤ 피고들 계좌 사이에 돈이 이체된 2019. 12. 11.로부터 대략 3개월이나 경과한 2020. 2.

24.에서야 각 자동차들에 관한 명의이전등록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위 명의이전등록 과정에서 명의이전의 원인에 관한 객관적인 서면 역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대여금채권 담보를 위한 피고들 사이의 양도담보설정약정이 존재하였는지 알기 어렵다.

⑥ 광주북부경찰서는 원고가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I를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하기는 하였으나(을 제41, 42호증),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 사이에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설정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양영희, 판사 김진환, 판사 황진희

1) 제1심판결문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자동차에 관하여는, 2015년경부터 이미 피고 C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서 원고가 I와 체결한 법인양도양수계약의 이행으로 피고 C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이 없으므로, 다른 자동차들과 달리 위 회사에 대하여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를 구하지 아니하고 피고 B에 대하여만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를 구하고 있을 뿐이다.